理 事 會 規 程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5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직원의 직무집행의 타당성 및 위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 제41조에 의거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타 회사 경영전략상 필요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결의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상의 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조의2 (대표이사의 임기)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사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선임(先任)사외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정한 대행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사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시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주식의 소각)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경영전부의 양수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 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공동대표의 결정
1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7. 신주의 발행과 증자
18. 사채의 모집
19.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2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21.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 및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23.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24. 중간배당
25. 주식의 소각
26. 준법지원인 임면
2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등

1.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 계획
3. 해외증권의 발행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결손의 처분
7.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담보제공
8. 이사회 규정
9. 이사회 소속 위원회 규정
10. 이사회 운영 규정
11. 내부통제 규정
12. 준법통제기준
1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 건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④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사항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임)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본조 ①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이사회는 정관 제41조에 의거 이사회 내에 회사의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만료시까지이다.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투명경영위원회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보상위원회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3.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⑥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별도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⑦ 본조 ⑥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2와 같다.

⑧ 본조 ⑥항에 따라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3과 같다.

⑨ 본조 ⑥항에 따라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4와 같다.

⑩ 본조 ⑥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3 (긴급집행)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등 집행임원을 말하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비치·보존한다. 의장은 제17조 이사회 지원조직의 책임자로 하여금 의사록의 작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평가제도)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의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부 칙 (1998. 0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3.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5. 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8.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6.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1>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 **이사회 규정 제12조 (위임)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별 자기자본의 20% 미만의 국내외 장단기 차입 및 연장**
2. **공사수행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한도 설정**

Bid-Bond (B-Bond), Performance-Bond(P-Bond), Advance Payment-Bond(AP-Bond), Letter of Credit(L/C), Trust Receipts(T/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Documents against Payment(D/P),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 어음할인 또는 매각

4.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가. 자기자본의 2.5% 미만의 신용공여.

단, 추가지급보증은 기승인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기자본의 2.5% 미만

나. 당사 시행사업 또는 도급사업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5. 자기자본의 2.5% 미만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담보제공

6. 차입기간 및 보증기간의 연장

7. 자기자본의 5% 미만의 신규 투자 및 자기자본의 2.5% 미만의 출자.

단, 내부거래시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

8. 기 승인된 국내외 투자사업과 관련한 소요자금의 재기채 및 지급보증

9. 자산총액의 5%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

10. 100억원 미만의 자산 임대차 계약. 단, 내부거래시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거래

11.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산운용 및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
12. 고문, 상담역, 보좌역 등의 채용 및 위촉
13.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정
14. 이사회로부터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채의 발행

<별표 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⑥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를 확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위원의 책임 감경은 정관 상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6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회의 결의로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9조 (종류)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위원회와 임시감사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감사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1회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권자)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집절차)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정기감사위원회는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임시감사위원회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시기,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부의사항)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소수 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여부 결정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9) 외부 감사 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 시스템의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내부 감사 계획 및 그 결과

(14)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평가

(15)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제4장 보 칙

제18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및 전문가의 조력)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등)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사실의 활용)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실의 조직과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0. 05. 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8.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주주권익의 보호, 지속가능경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안전보건 업무수행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②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③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1. 사회공헌 전년도 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
2. 당해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별 5억원 이상의 기부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⑤ 지속가능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

⑥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2.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처분
3. 자기거래 집행 내역
4.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승인

⑧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중 1인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자문역)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의 평가 또는 보고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은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③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 (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역은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2.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②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해당 이사가 이사에 재선임 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개최)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기 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 04.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